

- 다. 기계 · 기구류 등 공산품
  - 라. 합판 · 각목 등 건축기자재
  - 마. 폭발성 · 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
-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- 제4조(관할관청)**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,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 · 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· 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. 이하 같다)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가 관장한다. <개정 2020. 6. 17.>
-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가 관장한다. <개정 2020. 6. 17.>
-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 ·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. <개정 2020. 6. 17.>
- ④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가 관장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##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<개정 2010. 12. 29.>

- 제5조(차고지의 설치 등)**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 ·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7. 11., 2014. 9. 19., 2018. 12. 31., 2020. 6. 17., 2024. 7. 10.>
1.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, 공영차고지, 화물자동차 휴게소,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
  2.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 · 군에 있는 경우 그 시 · 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, 공영차고지, 화물자동차 휴게소,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
  3.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 · 군에 있는 경우 그 시 · 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, 공영차고지, 화물자동차 휴게소,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
-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7. 11., 2018. 12. 31.>
-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3. 7. 11., 2018. 12. 31., 2022. 9. 30.>
1.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)
  2.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(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3. 토지이용계획정보(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④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